

[별지 제7호 서식]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겸
영신고서(제13조제2항 관련)

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신고서				처리기간 : 15일
신 청 인	상호		대표자의 성명	
	주소		연락처	
신고하고자 하는 업무 및 업무방법				
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0000년 00월 00일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				
※ 구비서류 1. 겸영업무의 예상 영업규모,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. 겸영업무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·허가·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가·허가·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협약서 3.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,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협약서				수수료 없음